

미국 뉴욕시의 홈케어서비스프로그램 (Home Care Service Program)과 시사점

The Impact of Home Care Service Program(HCSP) in US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 서론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차원의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의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각종 급여 및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의 경우는 메디케이드에서 지원받아 Home Care Service Program(HCSP)을 운영하고 있다.

HCSP는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

인과 장애인¹⁾ 모두를 대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수행과 관련된 신체적 수발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과 가정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하여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미국 뉴욕시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Home Care Service Program(HCSP)'의 사업 목적, 대상자 선정과정, 서비스 내용, 사업 추진 체계가 무엇이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1) 장애아동을 포함함.

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연관하여 제도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미국 뉴욕시 Home Care Service Program(HCSP)의 개요²⁾

1) 사업목적

장기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제한이나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미국의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각종 급여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³⁾.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주마다 다른 형태로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뉴욕시의 경우는 메디케이드의 지원을 받아 HCSP를 운영하고 있다. HCSP는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수행과 관련된 신체적 수발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여 개인과 가정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제도

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대상자 선정

(1) 신청자격

HCSP의 신청자격은 주로 메디케이드에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는 메디케어에 적용되는 사람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웨이버 프로그램(Medicaid Waiver Program)에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Home Health Services)의 자격기준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HCBS)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수가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⁴⁾.

(2) 신청의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뉴욕시와 뉴욕시 산하의 Community Alternative Systems Agency(CASA)는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메디케이드 신청 및 적용여부를 비롯한 HCSP 서비스 자격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CASA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와 관련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장애 관련 면접조사에서는 신청자의 손상정도,

2) 뉴욕시 인적관리국 사회보장서비스부(2010.3). 내부 자료 활용.

3) 미국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공적 장기요양 서비스의 하나로 제공되고 있음.

4) 정종화·주숙자(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양서원.

간략한 의학적 기록,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정도, 교육수준, 지난 15년간의 근로경험 및 근로 시 신체활동능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 밖에 면접 당시 조사원이 관찰한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태 등과 관련된 관찰정보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장애와 관련된 의학적 평가항목을 조사한다. 이는 신체 전반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더불어 기능상태에 대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3) 대상자 선정절차

HCSP 서비스 대상자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신청단계'로 HCSP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디케이드 신청 및 적용 여부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지자체(시·군 단위) 산하의 발달장애서비스 관련 사무소(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Office; DDSO) 또는 Community Alternative Systems Agency(CASA)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 심의단계'가 진행된다. 초기접수 담당자인 CASA의 코디네이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필요서류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때, 초기접수담당자는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 획득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단지 필요서류가 충족되어 2차 심사대상자 되었

음을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1차 심의단계는 통상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2차 심의단계'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의료전문가와 사회복지사는 1차 심의에서 전달된 관련서류와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자격획득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불합격 판정을 내릴 경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불합격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함께 통보해야 하며, 이는 통상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넷째, '3차 재심의단계'이다. 2차 심의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자격결정 심의위원회(Eligibility Determination Committee)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1차 심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1차 심의 담당자는 다시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뉴욕시 HCSP의 대상자 선정절차를 서비스 신청단계부터 단계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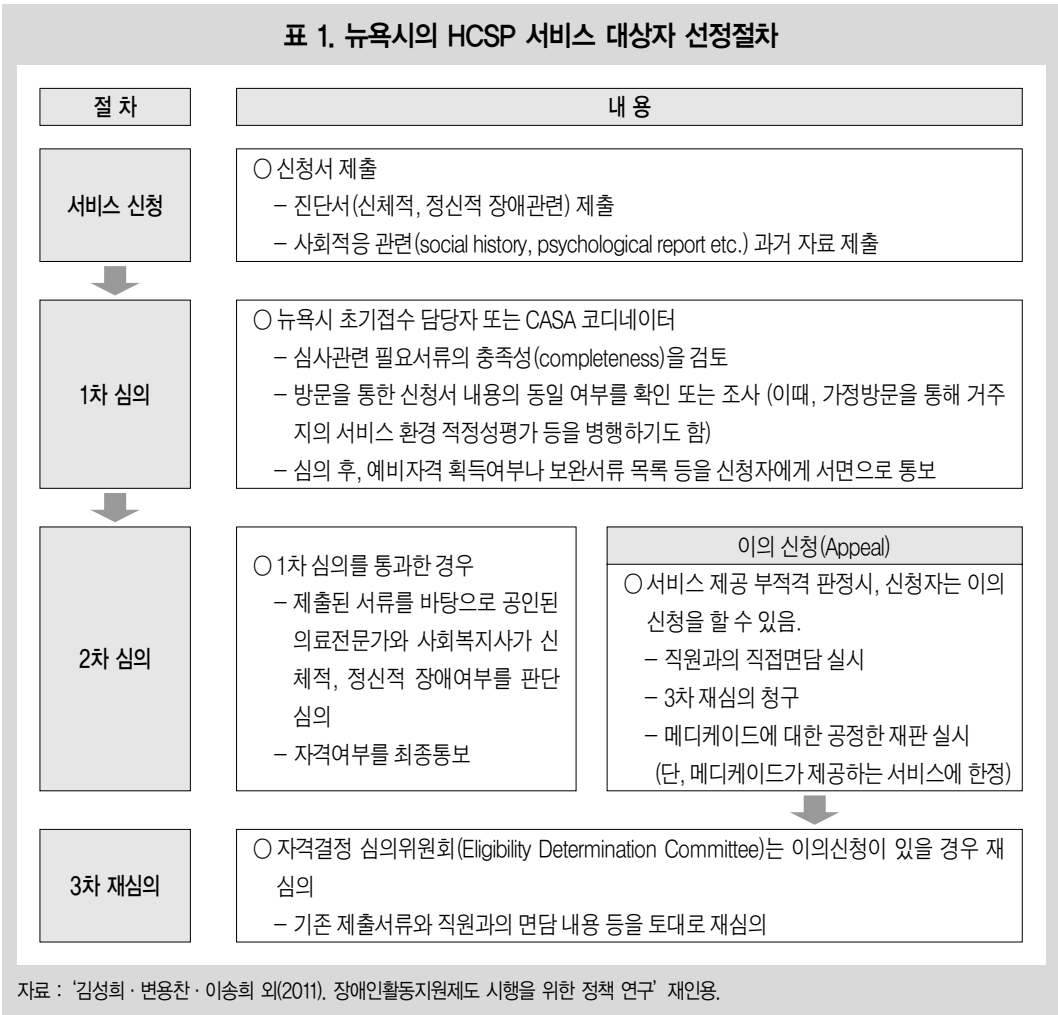
3) 서비스 내용

(1) HCSP 서비스 종류 및 내용⁵⁾

HCSP은 노인과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가능한 자신의 가정에서 가사지원을 비롯한 활동지원서비스, 사례관리와 전반적인

5) 뉴욕시 사회복지서비스부(2011.3). 뉴욕시 장기요양프로그램 관련 내부 자료.

표 1. 뉴욕시의 HCSP 서비스 대상자 선정절차



서비스 관리·감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 건강상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은 재택중심의 단기적 간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들은 노인과 장애인 모두 연령, 기능상태, 돌봄서비스의 필요정도 등에 따라 HCS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Personal Care’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수행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저소득층 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가사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Personal Care 프로그램의 경우는 메디케이드, 개별적인 서비스 구매, 그리고 다른 건강 관련 보증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자기관리가 가능한 경우 본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인을 고용하고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Personal Care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가사지원 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가사지원 서비스에서는 청소, 장보기, 세탁, 식사 준비 등 집안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에서는 청소, 쇼핑, 세탁, 식사준비, 간단한 요양서비스, 산책시 동행서비스, 의료기관 검진 시 동행서비스, 클라이언트의 행동변화 및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관찰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Managed Long-Term Care Program'이다. 이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적용 대상자 중 최소 120일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 신청자들이 자신의 가정에 거주하며, 종합적인 치료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때 제공되는 치료 서비스의 수준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치료적 프로그램의 수준이다. MLTC계획은 사례관리자 또는 사례관리팀이 서비스 신청자와 관련된 건강 및 사회서비스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사례관리, 가정내 돌봄서비스, 간호, 가사지원,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목욕하기와 같은 개인위생, 옷입기, 식사배달, 개인 응급 연락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Long Term Home Health Care Program'으로 이는 'Lombardi Program'으로 알려져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높은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국가 자격을 지니고 있는 전문간호사가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서 요양시설수준의 숙련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신청자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자신의 가정에서 건강하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Assisted Living Program'으로 이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돌봄서비스(long-term residential care)를 비롯한 가정내 건강 관리서비스,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치료적 프로그램, 가사지원, 수퍼비전,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전문간호사들에 의한 사례관리 서비스, 의료적 지원, 응급상황 시 대처 지원,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Care-at-Home Program'으로 이는 18세 미만의 신체적·발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정에 머물면서 의료적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 내용으로는 휴식지원서비스, 병원입원, 의사의 방문 및 의료적 서비스, 임상시

험 및 엑스레이 검사,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 치료를 비롯하여 집안 개조, 자동차 변형 등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메디케이드와 다른 보험에서 가능한 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단기적 치료나 일시적인 위탁간호서비스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2) 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 서비스 종류 및 내용

HCSP에서는 서비스 신청자 중 자기관리가 가능한 경우 본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그 서비스 제공인을 고용하고 비용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CDPAP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⁶⁾. CDPAP는 뉴욕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활동지원서비스로,

CDPAP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뉴욕시로부터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HCSP 서비스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CDPAP 이용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등 모든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CDPA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만성 질환이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HCSP의 Personal Care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Personal Care서비스와 차이점으로 CDPAP의 특징은 서비스 신청자들은 그들의 서비스 제공인(예: 활동보조인, 가정봉사원 등)을 선택하여 자유롭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이때,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

표 2. 뉴욕시의 Home Care Services의 종류와 내용

구분	세부내용
Personal Care	• 일상생활 수행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생활활동 예를들면, 걷기, 식사, 청소, 목욕과 화장실 사용하기 등에서 적어도 1~2가지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Managed Long-Term Care Program	•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적용 대상자 중 일반적인 요양이나 간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계획에 따라 건강관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Long-Term Home Health Care Program	• 보다 높은 수준의 요양 및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요양서비스), 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
Assisted Living Program	• 특정 요양시설을 통해 장기요양, 관리, 그리고 가정 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Care-at-Home Program	• 중증장애로 인해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의료 및 관련서비스를 자택에서 제공

자료: Department of Health, New York State(2010),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New York City(2010) Home Care Services 관련 홈페이지 자료 요약·재구성

6) 본인을 대신하여 비용지급과 제반관리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비영리 장애인단체 등 사무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후견인 등)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 감독, 채용, 교육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게 된다.

CDPAP의 특징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의 책임아래 활동보조인과의 인터뷰, 교육, 서비스 선택,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 활동보조인은 서비스 신청인과 상주할 수 없으며, 본인 부모, 서비스 신청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법정 대리인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
- 활동보조인 부재 시 대신할 대리인도 이용자 자신이 선정해야 한다.
- 활동보조서비스가 아닌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요구 등도 본인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본인의 의료상태 변화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CASA와 서비스 제공기관(활동보조인 소개업체)에게 통보하여 한다.

4) 추진체계

HCSP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관련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욕주에서는 HCSP를 비롯한 장기요양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한다. 특히, CHHAs⁷⁾의 서비스 적정성 여부, 시설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의무준수여부 등을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둘째, 뉴욕시에서는 CASA⁸⁾의 심의를 통과한 이용자들이 Personal Care 서비스를 비롯한 HCS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CASA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HCSP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메디케이드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서비스 신청자의 자격심사와 절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사정을 통하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와 함께 서비스 적용 대상자의 거주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CASA에서는 HCSP서비스 중 Long-Term Home Health Care Program, Care-at-Home Program 대상자의 경우 120일 간격으로, Personal Care 대상자의 경우는 6개월 마다 거주지를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 제공기관은 HCSP와 관련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CHHAs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보다 낮은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일시적인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주

7) Certified Home Health Agencies: 허가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8) 뉴욕시의 산하기관으로 뉴욕시와 업무협조관계를 유지하며, 메디케이드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를 신청자가 적절하고 원할이 받을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임.

로 제공하며 이와 함께, 적정 서비스에 대한 자문 및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과 관련된 자립생활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알선, 이밖에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용자 불편사항 접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HCSP 서비스 전달체계는 [그림 1]과 같다.

3. 시사점

본고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뉴욕시의 HCSP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구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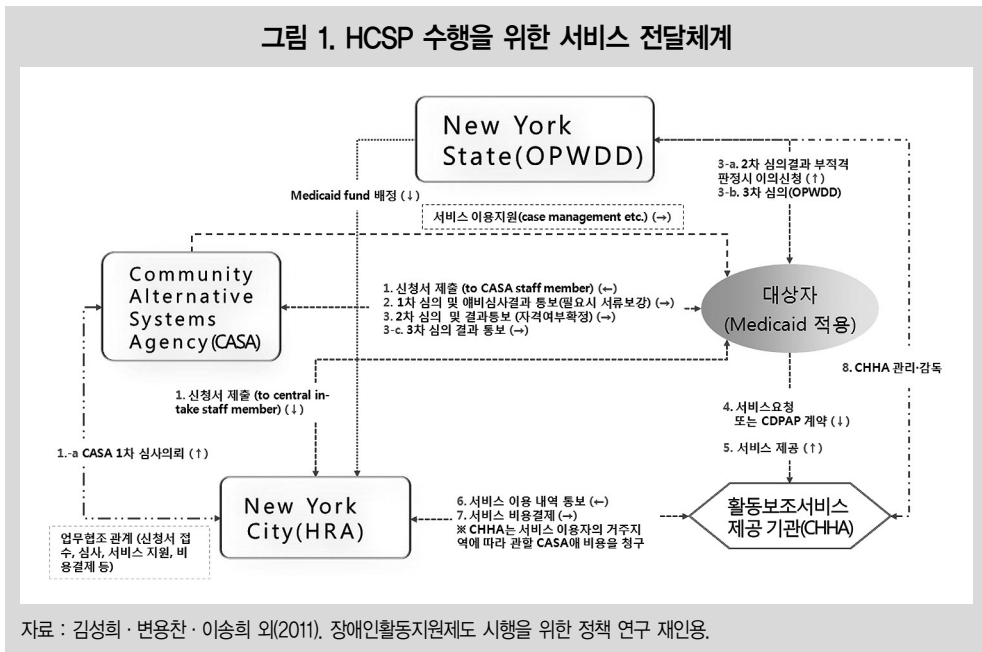
HCSP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자의 기능상태나 돌봄서비스 필요 정도에 따라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지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하여 서비스

표 3. 뉴욕주 · 뉴욕시 Home Care Services 관련 기관의 역할

구분	역할
뉴욕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전반 및 등록된 재가요양서비스기관(CHHA)의 시설의 적절성,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등 관리 · 감독기능을 수행 • 재가요양서비스기관(CHHA)가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뉴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A와 더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Community Alternative Systems Agency (CA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의 자격심사 • 메디케이드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포함)를 신청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중심의 서비스 플랜 개발
Certified Home Health Agencies (CHH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보다 낮은 수준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시적인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 및 활동보조서비스 등도 제공 • 고객들에게 적정 서비스에 대한 자문 및 다른 요양서비스(재활, 직업관련, 언어 치료사, 의료장비, 사회복지사나 영양사 소개 등) 정보 제공 업무 등도 일부 수행

자료: Department of Health, New York State(2010),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New York City(2010) Home Care Services 관련 홈페이지 자료 요약 · 재구성

그림 1. HCSP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가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8.8%로 2008년 36.1%에 비해 2.7% 포인트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의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위한 급여 종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HCSP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서비스 대상자, 연령, 기능상태 및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즉,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자별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층에 집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의 경우는 Care-at-Home Program을 통하여 중증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휴식지원서비스, 단기적 치료, 일시적 위탁간호서비스를 비롯한 집안 개조와 자동차 변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서비스의 범위가 협소하여 개인별 서비스 설계와 서비스에 대한 선택이 의미 있게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⁹⁾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서비스 신청 연령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 내용이 성인을 중심으로 한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아동을 위한 특성화된 급여 종류 및 서비스 내용이 개발이 필요시 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제언과 더불어 향후 서비스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경우는 정부가 장애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스스로가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도록 해 장애인이 주체적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지불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시 된다. **보건복지**

9)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음.